

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0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

신청인	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 등)
내용	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방법	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, 우편(등기), FAX * 신청서 양식 :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
기한	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* 예) 7.1~7.7일 입원(7.1~7.3 대기기간), 이후 7월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→ 7.7일부터 60일 이내 신청

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·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

- ▶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
- ▶ 상병수당 지급

최종급여일수 x 46,180원



상병수당,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



사례 A | 근로자
디스크가 파열되어 입원치료 후 계속 외래진료를 다니고 있어요.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시는데, **생계 걱정**에 아픈 걸 참고 일하다 보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



사례 B | 택배노동자
갈비뼈 골절로 2주 정도 입원하고, 이후 몇 달간 일을 쉬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, **저축도 떨어져가고 막막해요**



사례 C
암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꾸준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요. 병도 병이지만 **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 게 불안해요**

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?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**'상병수당'**을 검색해 주세요!



[창원중부지사]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(신월동 100-2)
2층 상병수당운영팀
TEL. 055-211-0220~0226

[순천곡성지사]
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새길 15-4 상병수당운영팀
TEL. 061-750-0420~0425, 0387

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| 1577-1000

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
상병수당 시범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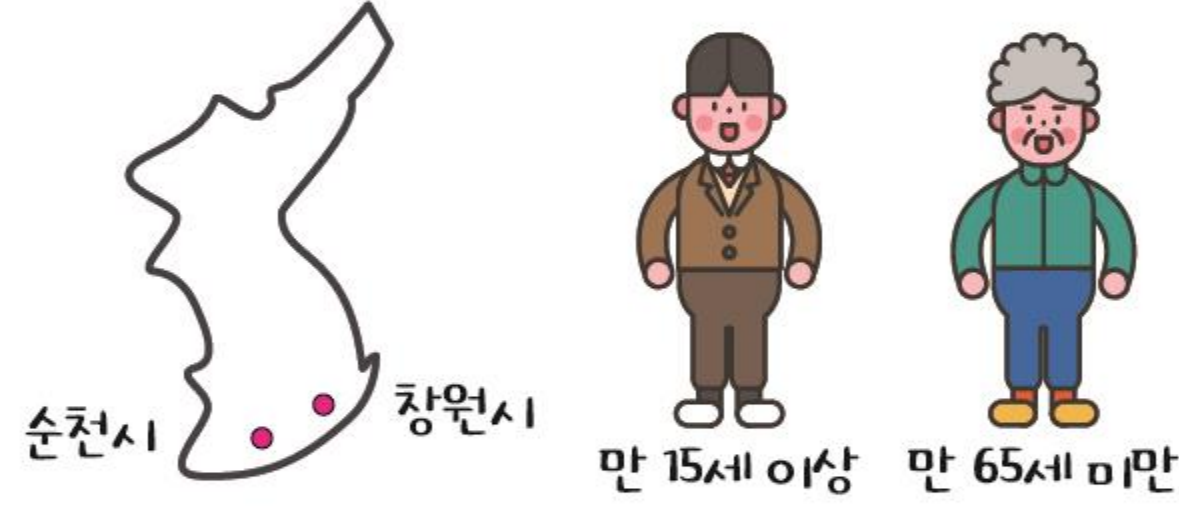
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



상병수당이란?

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

- 사업기간 | 2022.7.4. ~
- 대상지역 |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

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<기본 자격>

거주지	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
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국적	대한민국 국적자 * 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

<취업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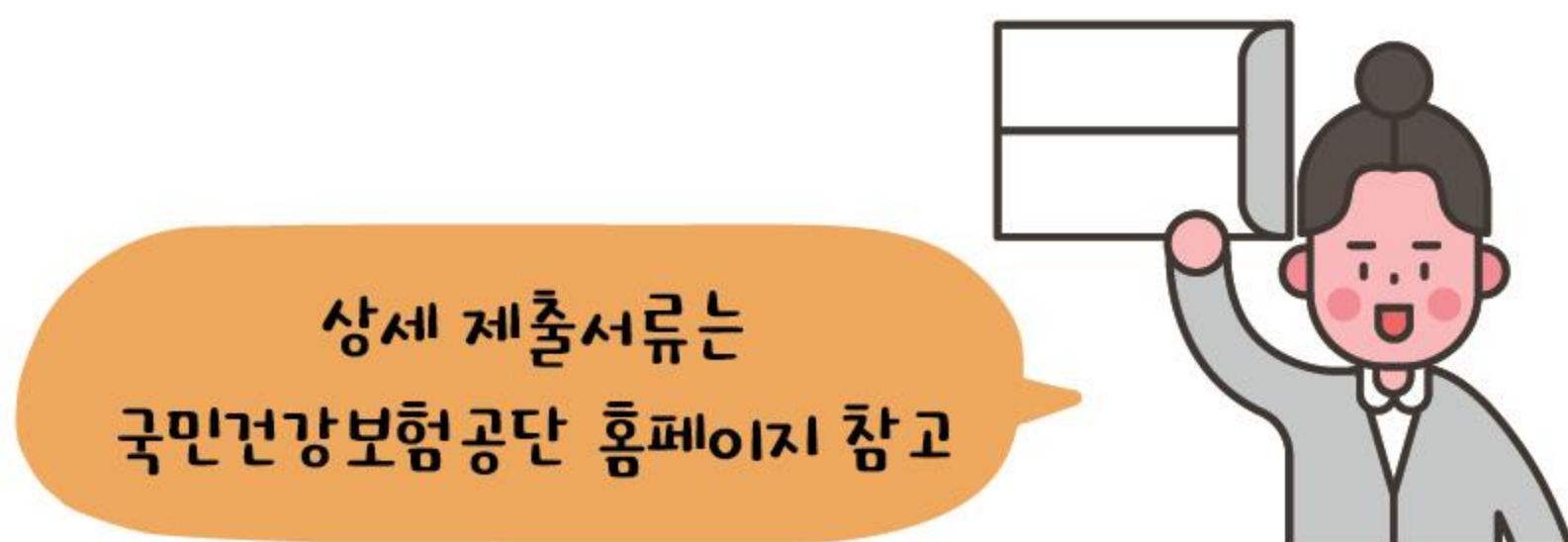
- ▶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-산재보험 가입자* (가입기간 1개월 이상)
* 특수고용직,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(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- ▶ 자영업자
*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(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)

<지원제외자>

- ▶ 질병목적 외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- ▶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 수급자
- ▶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수급자
- ▶ 자동차보험 수급자
- ▶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- ▶ 공무원, 국·공립학교 교직원
- ▶ 해외출국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
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- ▶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(대기기간 3일) 입원했을 때
* 조산원·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 미인정
-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·분만제외
- *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·수급 가능
- ▶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,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
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



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?

- ▶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 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6,180원 지급
* 예) 외래진료는 1주당 최대 2회까지 인정 (단,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외래 횟수 제한 없음)
- ▶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•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
* '22.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, 7일 외래진료를 받고 '23.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, 7일 외래진료 받은 경우
▶ A질병에 대해 7일(10일 - 3일), B부상에 대해 11일(14일 - 3일) 지원



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0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

- ▶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, 해당 질병·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음
- ▶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

- (공통)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
- (입원)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
- (외래)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

※ 유의사항

- ①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모두 동일해야 함
- ② 입원 초일(대기기간 1일차)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
- ③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
* 산정특례 등록된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, 외래진료 횟수제한 없음

02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세요

- ▶ 각종 의무기록지 (의료기관 발급)
- ▶ 본인계좌 통장 사본
- ▶ 근로종단확인서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- (내용)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사항 확인
- (작성) 사업주
- (서식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- ▶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 (자영업자에 한함)
* 현금영수증 전표, 신용카드 전표, 세금계산서만 해당
- ▶ 고용-산재보험 가입내역서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-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)